

정 관

제정	1999	년	01	월	20	일
개정	1999	년	12	월	21	일
개정	2000	년	04	월	10	일
개정	2001	년	03	월	10	일
개정	2001	년	08	월	21	일
개정	2002	년	02	월	25	일
개정	2002	년	07	월	23	일
개정	2004	년	03	월	16	일
개정	2005	년	03	월	25	일
개정	2006	년	03	월	17	일
개정	2007	년	05	월	29	일
개정	2009	년	03	월	27	일
개정	2009	년	11	월	30	일
개정	2010	년	03	월	26	일
개정	2013	년	03	월	29	일
개정	2015	년	03	월	20	일
개정	2017	년	08	월	29	일
개정	2017	년	10	월	10	일
개정	2018	년	03	월	30	일
개정	2019	년	03	월	28	일
개정	2020	년	03	월	27	일
개정	2021	년	03	월	30	일
개정	2023	년	03	월	30	일

주식회사 드림어스컴퍼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드림어스컴퍼니”라 한다. 영문으로는 ‘Dreamus Company’라 표기한다. (2019.03.28 본 항 개정)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음향기기 제조업
2. 전자부품 제조업
3. 음향기기 및 전자제품 도. 소매업
4. 반도체 (칩)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업
5.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연구개발 및 공급·제조 판매업
6. 전 사항과 관련된 상품, 부품 및 완제품 수출입업
7. 부동산 및 기계, 장비, 매매 및 임대업
8. 전자상거래
9. 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
10. 주류 판매업
11. 공연시설 운영 및 문화센터 운영업
12. 음반 및 영상물의 기획, 제작, 유통, 판매 및 그 관련 부대사업
13.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4.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5.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16.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관리, 서비스업
17.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18.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19. 기타 정보 서비스업
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21. 캐릭터 사업
22.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제작, 유통, 판매에 관한 사업
23. 전자지급결제대행업
24. 인터넷 방송업

25. 광고업
26. 전자전기기계 기구 및 관련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급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27. 통신기계기구 및 관련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급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28.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 중개알선업
29. 국내외의 공연 및 이벤트기획, 제작, 투자 및 판매업
30. 대중문화예술기획업 (2020.03.27 본 호 신설)
31.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암호화 자산의 매매 및 중개업 (2023.03.30 본 호 신설)
32. 인공지능 기반 사업(2023.03.30 본 호 신설)
33. 위 각호의 관련된 전자상거래업 (2023.03.30 본 호 개정)
34. 위 각호의 관련된 통신판매업 (2023.03.30 본 호 개정)
35. 기타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2023.03.30 본 호 개정)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 ①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영업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reamuscompany.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 신문에 한다. (2019.03.28 본 항 개정)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 주로 한다.

제 6 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 주(1 주의 금액 5,000 원 기준)로 한다.

제 7 조 [1 주의 금액]

주식 1 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

제 8 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2019.03.28 본 조 삭제)

제 8 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2019.03.28 본 항 개정)

제 9 조 [주식의 종류]

회사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 9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는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 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우선주식의 의결권 유무는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9% 이상 25%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에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2019.03.28 본 항 개정)

③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과 동액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우선주식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등한 비율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다음 사업 년도의 배당 시에 미 배당 분을 누적하여 우선주식에게 보통주에 대한 배당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⑤ 무의결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을 갖는다.

⑥ 회사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써 회사의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⑦ 회사가 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하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의 주주들이 배당 받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배당 받는다. 단, 특정의 우선주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당해 우선주에 대하여는 유/무상증자 내지 주식배당의 경우에 당해 우선주와 동일한 종류의 우선주를 배정 내지 배당 받을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⑧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 년 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존속기간을 정하며 그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⑨ 전 항의 기간만료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9.03.28 본 항 개정)

제 9 조의 3 [전환주식]

① 회사는 25,000,000 주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021.03.30 본 항 개정)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식의 총수는 전환되는 우선주식의 총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합병, 주식의 병합 및 분할, 주식교환, 주식 배당 또는 추가적인 주식의 발행 등 전환우선주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환권 행사로 발행할 보통주식의 총수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

위 안에서 그 발행시 이사회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주권의 희석방지관례를 감안하여 정하는 희석방지 조항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③ 전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의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발행일 이후부터 존속기간 만료 전일까지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주식이 발행된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은 일할 배당에 의하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제 13조를 준용한다.

제 10 조 [일반공모증자 등] (2019.03.28 본 조 삭제)

제 11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19.03.28 본 항 개정)

2. 상법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권을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19.03.28 본 항 개정)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19.03.28 본 항 개정)

7.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2019.03.28 본 항 개정)
8.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19.03.28 본 항 개정)
9.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제 2 항에 따라 주주 외에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2 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상법시행령 제 30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5 호의 최대주주와 주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의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9.03.28 본 항 개정)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 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9.03.28 본 항 개정)

⑧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019.03.28 본 항 신설)

제 13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4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2019.03.28 본 조 삭제)

제 15 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2019.03.28 본 조 신설)

제 16 조 [명의개서 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에는 당 회사에서 할 수 있으며 당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2019.03.28 본 항 개정)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7 조 [기준일]

① (2021.03.30 본 항 삭제)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19.03.28 본 항 개정)

제 3 장 사 채

제 18 조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8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 513 조 제 3 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9.03.28 본 항 신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 1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9.03.28 본 항 개정)

제 18 조의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 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 18 조의 2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9.03.28 본 항 개정)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1 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 1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9.03.28 본 항 개정)

제 19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6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2019.03.28 본 항 개정)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20 조 [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1 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 36 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9.03.28 본 항 개정)

제 22 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 주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 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 조의 4 제 3 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4 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 3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9.03.28 본 항 개정)

제 25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6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7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8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 31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 1 절 이 사

제 32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33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5 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32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9.03.28 본 항 개정)

② 사외이사가 사망·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32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9.03.28 본 항 개정)

제 36 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7 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9 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 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경업금지),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40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2019.03.28 본 항 삭제)

③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 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2021.03.30 본 항 개정)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9.03.28 본 항 개정)

⑤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본 조 제 3 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2019.03.28 본 항 삭제)

제 41 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2 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3 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3 절 대 표 이 사

제 44 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45 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장 감 사

제 46 조 [감사의 수]

회사는 1 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 47 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할 수 있다. (2021.03.30 본 항 개정)

④ 제 3 항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계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021.03.30 본 항 신설)

제 48 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 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46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9.03.28 본 항 개정)

제 49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 37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9.03.28 본 항 개정)
-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2019.03.28 본 항 신설)
-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9.03.28 본 항 개정)
- ⑦ 제 6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9.03.28 본 항 개정)

제 50 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1 조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2019.03.28 본 조 삭제)

제 52 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 3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 계

제 53 조 [사업 년도]

회사의 사업 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54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제 1 항 각호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점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 5 항 및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⑧ 제 5 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 1 항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2019.03.28 본 항 개정)

제 55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019.03.28 본 항 개정)

제 56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7 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정관 제 54 조 제 8 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2019.03.28 본항 개정)

제 57 조의 2 [중간배당]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7 월 1 일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 462 조의 3 에 의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결의는 제 1 항의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2019.03.28 본 호 신설)
 6. 상법 시행령 제 19 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2019.03.28 본 호 신설)
-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당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58 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1 조(주식매수 선택권)와 제 52 조(외부감사인의 선임)의 변경사항은 이 회사의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8월 29일자 주주총회 결의에서 승인한 합병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조, 제 13조, 제 16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